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전부개정, 2011. 2. 5. 시행)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 및 신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
- 나.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안 제8조)
- 다. 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 주변의 조망 훼손 여부 등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관계전문가 3명이상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 (안 제2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FAX : 440-8764
- E-mail : jbtl29@korea.kr(전화 : 440-6224)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관리·보호·육성 및 인천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 중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것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을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② 이 조례에서 “시문화재자료”란 시장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④ 이 조례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2장 시 문화재위원회

제3조(설치)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4.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5.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6. 시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시 외 반출 허가
7. 시지정문화재의 매입
8. 시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9. 시 문화재 자료에 관한 사항
10.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2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부동산문화재에 관한 사항과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상변경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2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문화재와 기념물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분과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수는 시장이 정한다.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 및 시·도 문화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 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재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심의를 위하여 출석하거나 출장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

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 제16조(지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중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해당 분과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람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시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30일간 예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5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시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⑧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3조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시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거나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많아 개별통지가 곤란할 때에는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게시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자료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은 제18조에 따라 시보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었거나 공익상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

애로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8조 및 제20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에 인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은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자료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재의 가 지정) ① 시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문화재를 시문화재로 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 지정은 가 지정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지 않으면 그 가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의 고시는 하지 않으며 그 효력은 가 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2절 보존·관리

제23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공공단체나 그 밖의 법인(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지정문화재를 관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있어서 시장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그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관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시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 제20조는 제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기록보존) 시장은 시지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허가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명승지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또는 그 채취나 반출을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2. 시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와 국가지정문화재를 촬영하는 행위(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
3. 시지정무형문화재를 녹음·촬영하거나 악보·대본 등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4. 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제27조(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국가·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해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군수·구청장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6.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

⑤ 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위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국가 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시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⑥ 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지정문화재는 시장에게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검토를 생략한다.

제28조(반출금지) ① 시지정문화재는 시 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전시 등의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

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관리를 위한 지시)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시할 수 있다.

1. 시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시지정문화재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시지정문화재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 부담으로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시지정문화재의 매입) 시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매입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사항)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과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 연서로서 하여야 하며,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상속자 또는 이수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변경 또는 해임한 때
2. 시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에 변동이 있을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동이 있을 때
4. 시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때
6. 시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6조제1호 및 제28조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6조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 또는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32조(보조금)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다음의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가 시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
2. 제29조에 따라 지시를 시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문화재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조금은 군수·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제33조(전수교육)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

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전수교육조교) ① 시장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전수장학생)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은 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명예보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손실 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시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1조에 따른 직권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8조(준용) 가 지정한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는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제3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39조(공개) 시지정문화재는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관람료의 징수) ①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를 해당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4절 조사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그 밖에 환경보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나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 제41조는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 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시지정문화재로 가 지정된 문화재의 조사에 관하여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시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 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관리단체와 소유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대상자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밖의 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표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하여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받게 될 경우 그 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지정문화재 또는 가 지정된 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지정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시지정문화재 또는 가 지정된 문화재의 관리·보호·공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제4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

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